

부속서 3-라-2
제3.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

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, 이 상품 (¹) (장소 및 우편번호 ²)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신고한다.

장소 및 날짜

수출자의 서명

¹ 원산지 국가,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

²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(우편번호를 포함한다)